
행정심판국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8. 6.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 목 차 ||

I. 감사 목적	1
II. 감사 개요	1
III. 감사 결과	2
< 총 평 >	2
1. 행정심판사건 처리 분야	6
가.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통지의무 미준수	6
나. 행정심판 장기 미해결사건 안내 규정 불비	8
2. 민원처리 분야	11
가.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및 기간연장조치 미흡	11
나.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미준수	14
3. 사무관리 분야	16
가. 업무 인계·인수실태 미흡	16
4. 계약업무 분야	18
가. 계약대가 지급 지연	18
나. 감독과 검사직무 겸직제한 준수	20
다. 검사기간 미준수	21

5. 회계분야	23
가.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23
나.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25
다. 정부구매카드 사용 후 실명서명 미흡	27
라. 출납계산서 증빙자료 미흡	28
IV. 적극행정 수범사례	30
1. 임금채권부담금 등 징수처분 청구사건 조정·일괄해결	30
2.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조정 및 국간 협업처리	31
V. 향후 조치계획	33
< 별 첨 > 감사관련 규정	34

I

감사 목적

- 행정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잘못된 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업무처리시스템, 예산집행·절차 등 업무전반을 확인·점검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자체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잘못, 손실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하고 모범 사례는 발굴·전파하여 위원회 실·국간 균형잡힌 업무처리를 유도

II

감사 개요

- 실시기간 : 2018. 4. 9.~2018. 4. 27.(15일간)
- 감사대상 : 행정심판국 (7개과·팀)
- 대상업무 : '16. 4월~'18. 3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및 회계
- 중점분야
 - 대상부서 업무처리 관련 제반사항
 - 민원처리, 계약업무, 회계분야 등의 집행관련 사항
 - 업무처리의 법적기간 준수, 업무계획 이행, 자체 지침·예규 등의 준수여부 등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반장) 등 5명

총 평

- 행정심판국의 최근 2년간(2016. 4월~2018. 3월) 업무 처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 관련 법령·지침 등의 준수사항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과거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계약업무 중 감독과 검사 분리 문제는 현격히 개선되었음
- 다만, 일부 관련법규 등의 준수사항 미흡,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의 재결기간 연장안내와 민원처리기간 연장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 결재자의 관심이 촉구됨
 - 행정심판사건 처리 관련, 안내절차(재결기간 연장, 민원처리기간 등)를 미준수한 사례
 - 업무 인계·인수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대신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사례
 - 계약·지출업무 분야에서는 담당자 및 결재자의 관리소홀과 해당 업무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
- 한편, 부담금 부과의 부당성을 청구한 다수(55건) 사건을 조정을 통해 일괄해결하고, 변상금 부과사건을 고충처리국과 협업으로 처리하는 등 적극행정 수범 사례도 있었음

< 지적사항 총괄표 >

합 계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시정	고발
총건수	금액										
11				5		4	1		1		

구 분	소관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1. 행정심판사건 처리 분야			
행정심판재결기간 연장 통지의무 미준수	행정심판 총괄과	○ 재결기간을 연장할 시는 재결일 종료 7일전 통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행정심판 장기 미해결 사건에 대한 안내규정 불비	행정심판 총괄과	○ 재결기간 90일이 경과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 등에게 행정심판사건 진행상황이 통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규정 등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2. 민원처리 분야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및 기간연장조치 미흡	행정심판 총괄과	○ 민원처리 시 관련규정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드시 기간연장조치 - 장기간(100일 이상) 미처리 민원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	주의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미준수	행정심판 총괄과	○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관련규정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드시 기간연장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구 분	소관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3. 사무관리 분야			
업무 인계·인수실태 미흡	행정 심판국	○ 인계·인수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가능토록 성실하게 작성 하되 입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4. 계약업무 분야			
계약대가 지급 지연	행정심판 총괄과	○ 대금지급(기성금 및 준공금)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지출관리 및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검사기간 미준수	행정심판 총괄과	○ 계약의 이행완료통지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5. 회계분야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행정심판 총괄과 행정교육 심판과	○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을 반납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시차출퇴근 또는 유연근무자의 경우, 해당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출장식비나 업무추진비가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행정심판 총괄과	○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을 반납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비 정산 시, 공용차량 등 이용 여부 및 업무 추진비 이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구 분	소관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정부구매카드 사용 후 실명서명 미흡	행정 심판국	○ 정부구매카드 사용 후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 으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출납계산서 증빙자료 미흡	행정 심판국	○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작성 시, 결의서 및 영수증 등 증거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식인원 관리대장 상의 e-사람 집계 외 인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수범사례 >

제 목	부 서
임금채권부담금 등 징수처분 다수 청구사건 조정·일괄 해결	사회복지심판과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 조정 및 고충처리국과 협업 해결	재정경제심판과

1. 행정심판사건 처리분야

가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통지의무 미준수

□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통지의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서면으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면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라 60일 이내 재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 처리할 수 있고 재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심판 업무이행 기준’에는 ① 청구된 사건은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처리하겠으며, ② 재결기간이 60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7일 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 재결기간(「행정심판법」 제45조)
 - ① 재결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진행상황 안내(「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 현장」)

※ 재결기간이 60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7일 전까지 청구인·피청구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감사결과

- 2016. 4월~2018. 3월 기간 동안 행정심판 사건 처리현황을 점검한 바, 총 52,247건 중 24,331건(46.6%)이 60일 이후 처리되었으며,
 - 60일 이후 처리한 24,331건 중 657건(2.7%)은 재결기간 연장 통지도 하지 않았음.

【 재결기간 연장사실 미통지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재결기간			연장 통지	연장 미통지
	소계	60일 이내	60일 이상		
합계	52,247	27,916	24,331	23,674	657
2016년	20,517	9,853	10,664	10,251	413
2017년	25,775	15,372	10,403	10,204	199
2018.3월	5,955	2,691	3,264	3,219	45

- 또한 연장 통지를 한 23,674건 중 10,258건(43.3%)은 재결 기간 종료 7일전 연장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7일전 연장사실 통지의무 미준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연장통지 건수	연장사실 7일전 준수 여부	
		준수	미준수
합계	23,674	13,416	10,258
2016년	10,251	7,180	3,071
2017년	10,204	4,689	5,515
2018.3월	3,219	1,547	1,672

□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행정심판 총괄과	○ 재결기간을 연장할 시는 재결일 종료 7일전 통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허스시스템의 개선·보완 및 업무담당자의 교육, 결재자의 관리감독 철저 필요	시정

나 | 행정심판 장기 미해결 사건에 대한 안내규정 불비

□ 90일 이상 장기 미해결 사건 안내 미흡

-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60일 이내 재결하여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장기 (90일 이상) 미해결 사건에 대한 중간 안내(통보)규정이 없어 해당 사건 청구인 등의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관련법령

- 재결기간(「행정심판법」 제45조)
 - ① 재결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감사결과

- 2016. 4월~2018. 3월 기간 동안 행정심판 사건 중 장기 미해결(재결기간 90일 경과) 실태를 점검한 바, 총 12,141건 중 3,589건은 재연장 통지를 하고, 8,552건은 법령에 재연장 통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 하반기부터 청구인 등에게 재결기간 재연장 통지(안내)를 실시하지 않음.

【 재결기간 90일 경과 재연장 통지 현황 】

(단위 : 건)

구 분	90일 경과		
	계	통지	미통지
총계	12,141	3,589	8,552
2016년	4,229	2,420	1,809
2017년	6,154	1,163	4,991
2018년 3월	1,758	6	1,752

□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행정심판 총괄과	<p>○ 재결기간 90일이 경과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 등에게 행정심판사건 진행상황이 통보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규정 등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p> <p>※ 운영규정 제정,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의 개선·보완, 업무 담당자의 교육, 관리감독 철저 필요</p>	개선

2. 민원처리 분야

가 |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및 기간연장조치 미흡

□ 민원처리기간 관련 원칙

- 위원회로 접수된 일반민원은 유형별 처리기간(즉시·7일·14일)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당초 처리기간 내에 기간연장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 일반민원 유형별 처리기간(「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처리지침」 별표1)
 - (즉시) 민원접수사실 확인, 재직증명 등 신청
 - (7일) 단순질의,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관련 절차문의 및 처리촉구 등
 - (14일) 법령질의, 정책·제도 등 개선 건의, 직원 징계요구
- 처리기간의 연장(「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간 1회 연장이 가능하며, 민원인 동의 하에 재연장 가능

□ 감사 결과

- 감사대상 기간 동안(2016. 4월~2018. 3월) 일반민원 1,169건이 처리되었고, 이중 214건(18.3%)이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처리되었음
 - 처리기간 초과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가 121건(56.5%)이며, 10일을 초과하여 처리된 민원은 93건(43.5%)임

- 또한 처리기간을 100일 이상 초과한 사례도 3건이며, 당초 처리기간 내에 기간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건도 10건 확인됨.

【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현황 】

(단위 : 건)

연도	총 건수	처리기간 초과 건수			
		계	2일 이내	3~10일 이내	10일 초과
계	1,169	214	72	49	93
2016년	447	37	13	4	20
2017년	570	143	39	34	70
2018년 3월	152	34	20	11	3

【 민원처리기간 100일 이상 초과 현황 】

부서	민원신청번호	접수일	예정된 처리일	처리기간 초과일수	담당자 주장
행정심판 총괄과	1AA-1705-146779	'17.5.22.	'17.6.29.	186	담당자 업무량 과다
	1BA-1705-164366	'17.5.22.	'17.6.29.	186	
	1BA-1709-062738	'17.9.7.	'17.10.24.	111	

【 처리기간내 기간연장 미조치 현황 】

부서	민원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실제 처리일	경과일수
행정심판 총괄과	1AA-1607-156122	'16.7.25.	'16.8.11.	'16.8.22.	6
	1AA-1607-159944	'16.7.25.	'16.8.11.	'16.8.22.	1
	1AA-1608-113200	'16.8.17.	'16.9.5.	'16.9.6.	1
	1BA-1609-135301	'16.9.21.	'16.10.11.	'16.10.13.	2
	1BA-1610-101121	'16.10.17.	'16.11.3.	'16.11.4.	1
	1AA-1610-192347	'16.11.1.	'16.11.21.	'16.11.22.	1
	1AA-1702-073856	'17.2.14.	'17.2.22.	'17.2.24.	2
	1AA-1702-098312	'17.2.17.	'17.3.9.	'17.3.10.	1
	1BA-1702-140613	'17.2.27.	'17.3.8.	'17.3.10.	2
	1AA-1703-060213	'17.3.13.	'17.4.19.	'17.4.20.	1

□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행정심판 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에서 정한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드시 기간연장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간(100일 이상) 미처리 중인 민원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미준수

□ 정보공개 처리기준

- 정보공개청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 기간연장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 및 연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감사 결과

- 대부분 10일의 처리기간이 준수되고 있으나, 2016. 4월~2018. 3월 기간 동안 처리된 530건 중 75건(14.2%)은 처리기간이 초과되었고, 모두 기간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미준수 내역 】

총 건수	처리기간 이내	처리기간 미준수 건수(연장조치 미이행)			
		계	1일 초과	2~4일 초과	5일 이상 초과
530 (100%)	455 (85.8%)	75 (14.2%)	44	28	3

□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행정심판 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관련규정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드시 기간연장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3. 사무관리 분야

가 | 업무 인계·인수 실태 미흡

□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 공무원이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해야 함
- 업무 인계·인수 작성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되며,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됨

관련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동 시행규칙 제45조

□ 감사 결과

- 2016. 4월부터 2018. 3월까지 감사대상 부서의 인사발령자 34명에 대하여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실태를 점검
 - 인계·인수서 작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공지를 해온 결과 인수·인계서 작성 실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임
 - 다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치거나 전자문서 시스템 대신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입회자가 누락되는 사례도 일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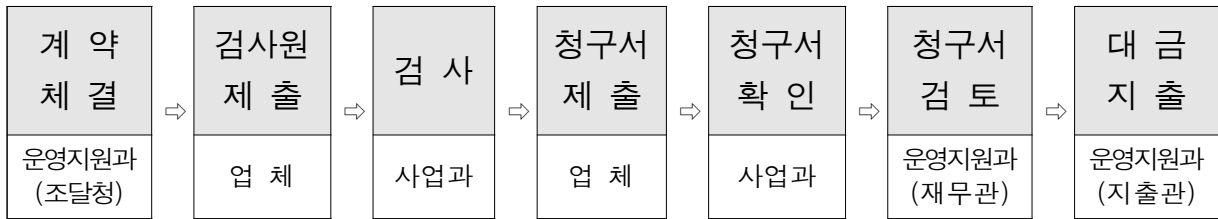
□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행정심판국	○ 인계·인수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가능토록 성실하게 작성하되 입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4. 계약업무 분야

가 계약대가 지급 지연

□ 대가지급 업무 흐름도



□ 대가 지급기간 준수 의무

- 기성금 및 준공금은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 지급

- 대금지급청구를 받고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예산 미배정에 따른 대가지급 기한은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지급

※ 대가지급기한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함 (선금은 제외대상 아님)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 감사 결과

- 2016. 4월부터 2018. 3월까지 500만원 이상 계약 건 총 31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금 지급기한 5일을 초과한 건은 6건(19.4%)임

【 대금 지급기간 초과 내역 】

담당부서	건 명	대금 청구일	대금 지급일	요청금액 (천원)	소요기간 (경과일수)
행정심판 총괄과	'16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운영 사업(5월기성금)	'16. 6. 2.	'16. 6. 7.	15,500	6일 (1일)
	'16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운영 사업(7월기성금)	'16. 8. 5.	'16. 8. 11.	15,500	7일 (2일)
	'17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운영 사업(1월기성금)	'17. 2. 21.	'17. 2. 27.	18,150	7일 (2일)
	'17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운영 사업(2월기성금)	'17. 3. 24.	'17. 3. 29.	18,150	6일 (1일)
	'17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운영 사업(5월기성금)	'17. 6. 2.	'17. 6. 7.	18,150	6일 (1일)
	'18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운영 사업(2월기성금)	'18. 3. 5.	'18. 3. 14.	62,187	10일 (5일)

□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행정심판 총괄과	○ 대금지급(기성금 및 준공금)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지출관리 및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 감독과 검사직무 겸직제한 준수

□ 감독과 검사제도

- (감독)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함으로써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
- (검사) 계약 이행으로 인한 성과가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임

□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 겸직 금지

-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서로 다른 사람이 수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계약내용의 적정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경우는 겸직 허용

※ KS표시품 등 법령에 의해 공인인증을 받은 물품 구매시는 감독의 직무는 면제될 수 있음. 다만, 사양·규격 등에 의한 물품구매시는 겸직 금지(조달청 매뉴얼 준용)

□ 감사 결과

- 2016. 4월부터 2018. 3월까지 500만원 이상 계약 건 총 31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모든 계약 건에서 감독과 검사가 분리되었음

다 | **검사기간 미준수**

□ **검사기간 준수 의무**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함
- 준공 또는 기성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검사가 완료되어야 대금이 지급될 수 있음
 -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
- 검사자는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 상기 이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 **감사 결과**

- 2016. 4월부터 2018. 3월까지 500만원 이상 계약건 총 31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검사기간 14일을 초과한 건은 2건(6.4%)임

【 500만원 이상 계약건 검사기간 미준수 내역 】

부서명	건 명	금액 (천원)	계약기간	준공일 납품일	검사일	검사기간 (경과일수)
행정심판 총괄과	2017년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운영사업 <1차기성금>	18,150	2017.1.1.~ 12.31.	2017-01-31	2017-02-21	22 (8)
행정심판 총괄과	2018년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운영사업 <1차기성금>	64,140	2018.1.1.~ 12.31.	2018-01-31	2017-02-20	21 (7)

□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행정심판총괄과	○ 계약의 이행완료 통지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 에 검사가 완료되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5. 회계 분야

가 |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 특근매식비 집행 기준

- 특근매식비(210-05목)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거나, 근무종료 후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저녁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근무지의 출장으로 인한 식비 지급 등이 확인된 자에게는 예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일의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관련규정

-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감사 결과

- 감사대상기간의 특근매식비 지급 실태를 점검한 바, 초과근무시간 미충족 및 출장 식비 중복지급 대상자 등 총 18명에 대하여 특근매식비(91,500원)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환경문화심판과의 2016년 9월 특근매식비 중 일부(209,400원)를 특근매식비(210-05목)로 집행하지 않고 비서실 운영비에 해당하는 기타운영비(210-16목)로 집행하였음

【 특근매식비 부당 지급 내역 】

해당 부서	부적정 지급인원	부적정 지급액	사유
행정심판총괄과	15명	65,000원	초과근무시간 미충족(4명) 출장 식비 중복 지급(9명) 저녁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2명)
행정교육심판과	3명	26,500원	초과근무시간 미충족(2명) 출장 식비 중복 지급(1명)

□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교육심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반납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시차출퇴근 또는 유연근무자의 경우, 해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특근 매식비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출장식비나 업무추진비가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나 |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 국내여비 집행 기준

- (일비) 원칙적으로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나,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함
- (식비) 출장 중 업무추진비로 식사한 경우, 출장여비 중 당해 식비는 감액 지급하여야 함

관련규정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3항, 제28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5-나, VIII-1-가

□ 감사 결과

- 감사대상기간 동안 차량을 임차하여 공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출장여비 중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부당지급한 사례가 2건 (20,000원) 확인됨

부서명	출장시작일	출장종료일	출장목적	기지급 일비	부적정 지급액
행정심판총괄과	2017.1.20.	2017.1.20.	법학전문대학원생 서울사무소 견학	20,000	10,000
	2018.1.24.	2018.1.24.	법학전문대학원생 청렴연수원 견학	20,000	10,000

- 또한, 출장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부당지급한 사례가 총 7건(74,390원) 확인됨

부서명	사용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처	기지급 식비	부적정 지급액
행정심판 총괄과	16.11.10.	정부3.0행사(허브시스템 소개) 관련 업무관계자 간담회	착한집밥	80,000	26,640
	17.06.20.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 활성화 논의 및 의견수렴 간담회	여장군	20,000	6,660
	17.07.13.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사용자교육 실시 관련 간담회	화평동왕냉면	20,000	6,660
	17.09.22.	행정심판국 국회 헌법개정 관련 업무담당자 간담회	싱카이여의도	20,000	6,660
	17.10.28.	행정심판국 비상임위원 추계 체육행사 관련 간담회	마실	20,000	6,660
	17.11.08.	간접강제제도 배상금 산정에 대한 간담회	사조미가	20,000	6,660
	17.11.28.	간접강제제도 배상금 산정에 대한 간담회	사조미가	45,000	14,990

□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행정심판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반납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비 정산 시, 공용차량 등 이용 여부 및 업무추진비 이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다 | 정부구매카드 사용 후 실명서명 미흡

□ 정부구매카드 실명 서명의무

-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반드시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
- 영수증에 실명서명이 없거나, 사용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별 회계처리 담당자가 서명을 보완하여야 함

관련규정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 감사 결과

- 업무추진비 영수증은 전반적으로 실명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수용비 및 특근매식비 영수증은 실명서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특근매식비의 경우 감사대상기간 총 140여건 중 50여건 (약 35.7%)의 영수증에 실명 서명이 누락되었음

□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행정심판국 전 부서	○ 정부구매카드 사용 후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라 | 출납계산서 증빙자료 미흡

□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작성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월 관서운영경비 지급결의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증거서류(결의서 및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관련규정

- 「계산증명규칙」 제31조~제33조

□ 감사 결과

- 감사대상기간 중 특근매식비 증빙자료(매식인원 관리대장 및 초과근무 세부현황) 4건, 기타운영비 영수증 3건, 사업추진비 영수증 1건 등 총 8건의 증빙자료가 누락됨
- 또한, 재정경제심판과는 매식인원 관리대장 상의 e-사람 집계 외 대상자(명단)를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출납계산서 증빙자료 누락 내역 】

해당 부서	증빙자료 누락 내역
사회복지심판과	2016년 6월분 특근매식비 매식인원 관리대장, 초과근무 세부현황 2016년 8월분 특근매식비 매식인원 관리대장, 초과근무 세부현황
국토해양심판과	2016년 8월분 특근매식비 매식인원 관리대장, 초과근무 세부현황
환경문화심판과	2016년 10월분 특근매식비 초과근무 세부현황
행정심판총괄과	2016년 9월 출납계산서 중 기타운영비 영수증 3건(총 256,320원) 2016년 11월 출납계산서 중 사업추진비 영수증 1건(72,000원)

□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조치할 사항	처분 요구
행정심판국 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작성 시, 결의서 및 영수증 등 증거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식인원 관리대장 상의 e-사람 집계인원 외 대상자 명단을 정확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1 | 임금채권부담금 등 징수처분 행정청구사건 조정·일괄해결

□ 추진배경

-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각 지역의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에 대해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징수함에 따라 이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행정심판이 다량 접수되어 분쟁의 조기 종식, 현실적인 행정력 제약 하에 가장 효율적인 처리방안 모색 필요

□ 추진내용

- 1단계로 2018. 1. 26. 행정위를 개최하여 농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관계법령들의 입법취지, 규정내용, 법적용 우선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담금 징수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이끌어 냄

※ 2018. 1. 26. 중행심 2017-17444(청구인: 남보은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인용재결

- 2단계로 위 인용 재결취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나머지 농협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 처분을 취소하고, 심판 청구인들은 각 심판청구를 자진 취하하도록 조정 실시

□ 주요성과

-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심판 계류 중인 동일 유형의 심판사건에 대해서 소멸시효(3년)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 부담금을 반환하기로 결정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징수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청구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부담금 징수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기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 모두 취하 합의

※ 위원회에 접수된 중행심 2017-17409 등 총 55건에 대하여 2018. 3. 29.자로 취하

□ 향후계획

- 근로복지공단에게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유형의 부담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지속 요청하여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예방토록 노력 경주

2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 조정 및 국간 협업 처리

□ 추진배경

- 당사자간 분쟁의 자율적이고 원만한 해결과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행정심판법」에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사례 축적

□ 추진내용(경위)

- (사건개요) 천안시가 국유재산 토지 12,500m²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 11. 천안시에 약 7천만원의 변상금 부과(2016. 2. 26. 천안시 행정심판 제기)
- 사전 개별 조정 협의(2016. 9. 7. ~ 9. 9.)
- 잠정 실무 조정안 마련(2016. 9. 12.)
- 양 기관 협의를 통한 최종 조정안 도출 및 합의(2016. 10. 13.)
 - 청구인은 변상금을 납부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되, 주차장 시설 조성비용(약 11억원)과 사용료를 상계하여 최초 사용기간부터 기산하고 변상금 부과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함
- 고충민원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행정심판사건 협의 처리(2016. 11. 21.)
 - 청구인/피청구인에게 합의권고 내용을 이행토록 문서 발송
-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 취하 종결(2016. 12. 27.)

□ 주요성과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원만한 분쟁 해결 및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사례 축적
- 권익위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사건을 고충민원으로 처리한 고충국과 행심국간 협업 우수사례

□ 향후계획

-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도입되어 2018. 5. 1. 시행되는바, 조정사례 전파 및 적극적인 조정 추진

V**향후 조치계획**

- 감사대상 수감부서를 포함한 전부서에 감사결과 통보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자체감사 결과 직원 교육 실시

- 감사결과 감사원 통보
 -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통보

- 감사결과 공개
 -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